

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10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1018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93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1. 1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9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 중 6/8지분에 관하여 전주시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 10. 접수 제1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2020. 12. 15.경’을 ‘2010. 12. 15.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